

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발급일		처리기간 30일	
신청인	상호(법인명)			성명(대표자)		전화번호	
	주소(주사무소 소재지)						
사 업 분 야	형식증명, 부가형식증명, 제작증명, [] 형식증명 [] 부가형식증명 []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 자증명을 받은 자 [] 기술표준품형식승인 [] 부품등제작자증명						
	「항공안전법」 제35조제1호부터 제4 호까지의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해 「항공안전법」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						
	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						
	항공운송사업자 [] 국내 [] 국제 [] 소형						
	항공기사용사업자						
	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						
	「항공안전법」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						
	「공항시설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						
	「공항시설법」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						
	변경 신청 사유						
주요 변경 내용							
「항공안전법」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4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 인을 신청합니다.							
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	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							

첨부서류	1. 변경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	수수료
	2.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신규대조표 1부	없음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